

충청북도생물산업육성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01년 12월 13일

나. 회부일자 : 2001년 12월 13일

3. 제안 이유

- 21세기 대표적 신지식산업인 생물산업을 충청북도의 핵심전략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기술개발을 통한 산업화를 촉진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충청북도 생물산업 추진에 따른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

4. 주요 골자

-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생물산업에 대한 중점 육성분야를 정함 (안 제3조)

- 생물산업에 대하여는 신기술개발 및 산업화과제 공모사업추진, 산업단지조성 등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4조)
- 재단이 설립되기까지 생물산업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와 자문, 신기술 개발과제 도출·평가, 기술협력, 재단의 설립지원 등을 위하여 연구단을 설치 운영하도록 함 (안 제5조 내지 제11조)
- 충청북도 생물산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단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12조)
- 재단의 명칭은 “충청북도생물산업진흥재단”이라 하고 재단내에 사무국 등 필요한 기구를 설치토록 함 (안 제13조)
- 재단의 재산은 중앙정부의 지원금, 충청북도 및 기초자치단체의 출연금, 기관·단체 및 기업체 등의 출연금으로 조성함 (안 제16조)
- 도지사 및 기초자치단체장은 재단의 안정적 운영과 자립기반구축을 위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17조)

5. 검토 의견

- 충청북도생물산업육성조례안은 21세기 대표적 신지식 산업인 생물산업을 충청북도의 핵심전략산업으로 발전시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충청북도 생물산업추진에 따른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

으로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나

- 충청북도생물산업연구단의 설치와 충청북도생물산업진흥재단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분리하여 제정해야 바람직하나 이를 통합하여 제정함으로써 재단이 설립될 경우 부칙의 경과 조치에 의하여 연구단은 해산되고 연구단의 기능과 재산은 재단으로 흡수되도록 되어 있어 재단설립 후 본 조례를 불가피하게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예상되고,
- 안 제7조 제2항의 “위원회”가 어느 위원회인지 명확하지 않으며
- 안 제7조 제3항의 5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한 임명 또는 선출 사항이 명시되지 않았고,
- 본 조례의 내용으로 보아 위원회는 전체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및 5개 산업분과위원회로 구분되는데 안 제9조의 회의는 어느 위원회에 적용되는 회의인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위원회 명칭을 명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